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윤기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92

발의년월일 : 2021.11.30.

발 의 의 원 : 윤기배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윤영애 의원
이시복 의원
장상수 의원
전경원 의원
황순자 의원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률의 조항 변경(안 제1조)

나. 상해 보상에 해당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범위 규정 (안 제2조)

다. 보상금 지급에 대한 인정범위 명시(안 제3조)

라. 장애와 상해 기준의 근거 법령 정비(안 제5조)

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한 별지 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

(별지 제1호,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4조,「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합의완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전단 중 “제34조”를 “제42조”로, “제35조”를 “제37조”로, “절차등”을 “절차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망당시”를 “사망 당시”로 한다.

1. “직무”라 함은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내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해, 질병”을 “상해·질병”으로, “시의회의원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상당한”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의회의원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상당한”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경우는 치료비”를 “경우에는 치료비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지급액이 큰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지급받”을 “이미 지급받”으로, “지급하되, 그 금액을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급하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2호”를 “제4조제1항제2호”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제4조제1항제3호”로, “14일이상”을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자중”을 “자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회의원중”을 “시의회 의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

2항 제1호" 를 "제2항제1호" 로, "시의회의원" 을 "시의회 의원" 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6조 제2항 제2호" 를 "제6조제2항제2호" 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심의회 회의)" 를 "(심의회의 회의)"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 을 "정책기획관" 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심의회의 수당등)" 을 "(심의회의 수당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안" 을 "범위 안"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 를 "청구권자는 제1항제1호" 로, "6월이내," 를 "6월 이내," 로, "30일이내" 를 "30일 이내" 로,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 를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 제2항" 을 "시장은 제13조제2항" 으로, "시장은" 을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3일이내" 를 "13일 이내"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 를 "따라"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 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권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자" 를 "청구권자"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rowspan="2">접수</td><td>제 호</td><td colspan="4" rowspan="2">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td><td>처리기간</td></tr>
<tr><td>년 월 일</td><td>15일</td></tr>
<tr><td colspan="2">보상대상의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3">청 구 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r>
<tr><td colspan="3"></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3">청 구 내 용</td><td>구 분</td><td colspan="5">□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td></tr>
<tr><td>금 액</td><td colspan="5"></td></tr>
<tr><td>계좌번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상 병 장 소</td><td colspan="2"></td><td>상 병
연월일시</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상병원인 및
발 생 현 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대구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6">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td></tr>
<tr><td colspan="7">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table>
<tr><td rowspan="2">접수</td><td>제 호</td><td colspan="3" rowspan="2">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td><td>처리기간</td></tr>
<tr><td>년 월 일</td><td>즉 시</td></tr>
<tr><td colspan="2">보상대상의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보상금청구내용</td><td>구 분</td><td colspan="3">□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td></tr>
<tr><td>금 액</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심의회 심의결과</td><td colspan="4"><판정>

<이유>

<심의위원서명></td></tr>
<tr><td colspan="6">대구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대구광역시 귀하</td></tr>
</table>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 (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0호)	제1조(목적) ----------제42조----------제37조----------절차 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시의회의원의 회기중 직무(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제2조(정의) ----------. 1. “직무”라 함은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내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말한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0호)	
2. 삭 제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3. ---------- 사망 당시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각 호----------.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1. ---------- 상해·질병---------- 해당 연도 ---------- 해당하

금액 (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	는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1호)	2. ----------해당 연도 ----------해당하는 ----------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 9. 18 조례 제3066호)	3. ---------- 경우에는 치료비의 --. ----------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② --- 각 호---------- 지급액이 큰 경우----------
③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	③ 제1항제2호 ---------- 이미 지급받---------- 지급하되, ----------

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장해등급” ----------.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14일이상----------.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대구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 9. 18 조례	② ---------- 각 호---------- 자 중 ----------

제3066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0호)	----------
1. 시의회의원중 1인	1. 시의회 의원 중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제1호---------- 시의회 의원---------- ---------- ---------- ----------.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심의회 기능)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 제2항 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제6조제2항제2호---------- ----------.
제10조(심의회 회의) ①·② (생 략)	제10조(심의회의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회의 간사) ① (생 략)	제11조(심의회의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 ---------- 정책기획관--------.
제12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2조(심의회의 수당 등) ---------- ---------- 범위 안-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권자는 제1항제1호----------- 6월 이내, ---------- 30일 이내 ----------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①제13조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시장은 지체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 경우 ----------.
②심의회는 시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3일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13일 이내----------.
③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	③ ---------- 따라 ----------.

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권자----------.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② ----------청구권자----------.

(붙임 1)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 · 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 ·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 ·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